



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

- 농 릫 부 -

농림부 고시 제1998-5호
가축 전염병예방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“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8. 1. 23
농림부장관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, 제7조,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여 축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독시설 설치대상등) ①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도축장·도계장 등 작업장(이하 “작업장”이라 한다)
2.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축산단지(돼지 또는 닭을 기르는 축산단지에 한하며, 이하 같다)
3. 기타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가축사육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가축시장 등

②도지사는 제1항의 소독시설 설치대상자에게 법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설비·명령을 하여야 한다.

③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차량 등은 다음

각호와 같다.

1. 작업장에 출입하는 가축수송차량(이하 “가축 차량”이라 한다)
2. 축산단지에 출입하는 가축·사료·동물약품·달걀·축산기자재·축산분뇨 운반차량과 동물진료차량(이하 “기타차량”이라 한다)
3. 어리장(가금수송용기)

제3조(실시장소) ①가축차량 및 어리장(이하 “가축차량등”이라 한다)의 소독은 차량소독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한다

②도지사는 관할 작업장의 소독시설이 부족하여 가축차량등에 대한 소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차량소독시설을 갖춘 가축시장등을 차량소독실시 장소로 지정하여 소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소독시기등) ①가축차량등과 기타차량의 소독실시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축차량등 : 가축을 내린 직후에 실시한다.
2. 기타차량 : 축산단지의 소독시설에서 축산단지 진입시에 실시한다.

②작업장경영자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

거 도지사로부터 차량 소독실시장소로 지정받은 자(이하“소독시설경영자”라 한다)는 가축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 후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차량소독실시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원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, 해당 운전자는 가축사육농장 또는 가축시장에 도착할 때까지 발급받은 차량소독실시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.

③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차량의 운송업자에게 소독을 명하거나 가축방역관 또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전항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소독방법) 가축차량등과 기타차량에 대한 소독방법은 [별표1]과 같다.

제6조(소독시설 설비) 소독시설 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1. 차량을 세척할 수 있는 세척장비(고압세척기를 포함한다)
2.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장비(소독약품을 혼합시킬 수 있는 소독약 보관탱크를 포함한다)
3. 어리장을 세척·소독할 수 있는 세척·소독장비(도계장에 한한다)
4. 수질오염방지시설(작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인입시키는 연결배관으로 갈음할 수 있다)
5. 기타 도지사가 가축차량등의 소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비

제7조(소독실시비용의 징수) ①소독시설 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가축차량 및 기타차량의 소독실시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1. 차량세차비(자동차등 운수장비 세차시설의 세차요금에 준한다)
2. 소독약품비
3. 수질환경보전등을 위한 공해방지 경비

②도지사는 차량소독실시비용의 적정징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비용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8조(차량소독실시증명서 확인등) ①가축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소독실시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농장내 진입을 거부하여야 한다.

②농장경영자는 가축차량운전자가 제시한 차량소독실시증명서의 발급일자등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차량소독실시증명서가 허위로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증명서에 자기농장에서 해당 차량에 상차한 가축마리수와 상차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.

③작업장경영자는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차량소독실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가축차량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.

제9조(소독관련 규정 위반시 제재) 도지사는 본 요령에 의한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과 축산단지 경영자,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가축을 수송하는 차량의 운송업자에 대하여는 [별표2]의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다만,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고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(소독관련 규정위반시 제재)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1]

가축차량등 및 기타차량에 대한 소독방법과 소독약제

1. 소독방법

구 분	소 독 방 법	비 고
가축차량	1. 반드시 오물을 제거하고 세차를 실시한 후 소독을 실시한다. 2. 차량전체를 소독하되 차량의 바퀴를 포함한 하부, 측면, 상부와 적재함이 적실정도(분무 입자 100~200nm 정도)로 한다.	
기타차량	차량전체를 소독하되 차량의 바퀴를 포함한 하부, 측면, 상부와 적재함이 적실정도(분무입자 100~200nm 정도)로 한다.	
어리장 (도계장에 한함)	반드시 차량에서 분리세척하여 오물을 제거한 후 소독하되 어리장이 적실정도(분무입자 100~200nm 정도)로 한다.	

2. 소독약제 : 석탄산수, 포르말린수, 크레졸비누액, 크레올린수, 크레신수, 가성소다등 알카리수제, 올 소페실페니산 나트륨 용액, 4급 암모늄제, 이산화염소제 및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독약제

[별표2]

소독관련 규정위반시 제재 조치기준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조치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
다.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조치한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	위반횟수별조치기준		
		1회	2회	3회 이상
1. 세척·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는 작업장 및 축산단지 가.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나.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 단지 다.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축시장등	법제7조 및 제44조 법제7조 및 제44조 법제7조 및 제44조	경고 주의 경고	과태료 50만원 경고 과태료 50만원	과태료 50만원 축산정책자금 지원배제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50만원
2.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명령에 불구하고 세척·소독을 하지 아니하는 가축 차량의 운송업자	법제6조 및 제44조	경고	과태료 30만원	과태료 50만원

養豚